

안양시 동 지원 담당 규정

제정	1973.	7.	1.	훈령	제 12호	일부개정	2006.	3.	16.	훈령	제475호
개정	1973.	9.	26.	훈령	제 19호	일부개정	2007.	2.	5.	훈령	제490호
개정	1973.	11.	2.	훈령	제 20호	일부개정	2008.	8.	27.	훈령	제507호
개정	1974.	6.	20.	훈령	제 26호	일부개정	2009.	7.	28.	훈령	제535호
개정	1975.	10.	1.	훈령	제 35호	일부개정	2010.	2.	11.	훈령	제546호
개정	1976.	7.	27.	훈령	제 46호	일부개정	2010.	11.	2.	훈령	제555호
개정	1977.	2.	14.	훈령	제 51호	일부개정	2011.	2.	28.	훈령	제561호
개정	1978.	1.	31.	훈령	제 55호	일부개정	2011.	12.	29.	훈령	제575호
개정	1980.	1.	25.	훈령	제 94호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개정	1982.	8.	5.	훈령	제125호	일부개정	2012.	2.	1.	훈령	제576호
개정	1983.	9.	14.	훈령	제132호	일부개정	2012.	8.	7.	훈령	제584호
개정	1984.	6.	7.	훈령	제138호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개정	1985.	11.	15.	훈령	제141호	일부개정	2014.	4.	10.	훈령	제612호
개정	1987.	1.	19.	훈령	제149호	전부개정	2017.	2.	10.	훈령	제665호
개정	1989.	5.	23.	훈령	제170호	(제명개정)					
개정	1990.	1.	22.	훈령	제185호	일부개정	2017.	6.	15.	훈령	제670호
개정	1990.	5.	24.	훈령	제189호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개정	1990.	11.	23.	훈령	제207호	일부개정	2018.	4.	4.	훈령	제682호
개정	1992.	5.	13.	훈령	제209호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전면개정	1992.	10.	15.	훈령	제212호	일부개정	2018.	11.	16.	훈령	제690호
개정	1993.	1.	21.	훈령	제214호	일부개정	2019.	10.	28.	훈령	제703호
개정	1993.	6.	1.	훈령	제218호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개정	1993.	8.	24.	훈령	제225호	일부개정	2020.	7.	10.	훈령	제712호
개정	1994.	6.	28.	훈령	제242호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개정	1995.	5.	19.	훈령	제264호	일부개정	2022.	1.	10.	훈령	제731호
개정	1996.	2.	29.	훈령	제287호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개정	1996.	7.	5.	훈령	제297호	일부개정	2022.	12.	30.	훈령	제739호
개정	1997.	1.	24.	훈령	제309호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개정	1997.	8.	7.	훈령	제319호	일부개정	2023.	3.	22.	훈령	제740호
개정	2000.	4.	19.	훈령	제385호	일부개정	2023.	11.	22.	훈령	제745호
개정	2000.	11.	29.	훈령	제401호	일부개정	2025.	1.	24.	훈령	제758호
개정	2003.	9.	3.	훈령	제431호	일부개정	2025.	7.	1.	훈령	제761호
일부개정	2004.	12.	10.	훈령	제453호	일부개정	2026.	3.	31.	훈령	제768호
일부개정	2005.	4.	13.	훈령	제46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양시의 실·국·소·원장, 과장·담당관 및 구의 과장에게 동 지원 담당을 지정하여 동 행정업무를 능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15., 2026. 3. 31.>

제2조(담당) 안양시의 실·국·소·원장, 과장·담당관 및 구의 과장(이하 “동 담당관”이라 한다)의 지원 담당 동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여름철 호우 및 태풍 시 동담당관 지원 담당 동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 6. 15., 2023. 3. 22., 2026. 3. 31.>

안양시 동 지원 담당 규정

제3조(지원) ① 동담당관이 담당 동에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동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② 동담당관이 특별지시를 받아 담당 동에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업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4조(결과 보고 등) ① 동담당관이 제3조에 따른 지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안양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동담당관이 동 지원업무 시 동 행정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인 방안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건의할 수 있다.

제5조(동장 협조) 동장은 제3조에 따른 동담당관의 동 지원업무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소속직원 동참) 동담당관은 제3조에 따른 동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동담당관의 소속직원을 동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 24.>

제7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안양시장이 정할 수 있다.

부칙 <2017. 2. 10. 훈령 제665호 전부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6. 15. 훈령 제670호,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② 「안양시 동 지원 담당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소·원장”을 “실·국·소·원장”으로 한다.

제2조 중 “국·소·원장”을 “실·국·소·원장”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③ 부터 ⑬ 까지 생략

부칙 <2018. 4. 4. 훈령 제682호,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안양시 동 지원 담당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안양시 동 지원 담당 규정 별표 <2018. 4. 4. 훈령 제682호> 참조]
부칙 <2018. 11. 16. 훈령 제690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0. 28. 훈령 제703호,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안양시 동 지원 담당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안양시 동 지원 담당 규정 별표 <2019. 10. 28. 훈령 제703호> 참조]

부칙 <2020. 7. 10. 훈령 제712호,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안양시 동 지원 담당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안양시 동 지원 담당 규정 별표 <2020. 7. 10. 훈령 제712호> 참조]

부칙 <2022. 1. 10. 훈령 제731호,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안양시 동 지원 담당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안양시 동 지원 담당 규정 별표 <2022. 1. 10. 훈령 제731호> 참조]

④ 생략

부칙 <2022. 12. 30. 훈령 제739호,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② 「안양시 동 지원 담당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안양시 동 지원 담당 규정 별표 <2022. 12. 30. 훈령 제739호> 참조]

③ 부터 ⑤ 까지 생략

부칙 <2023. 3. 22. 훈령 제740호>

안양시 동 지원 담당 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1. 22. 훈령 제745호>

이 훈령은 2024년 1월 1일에 시행한다.

부칙 <2025. 1. 24. 훈령 제758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 7. 1. 훈령 제76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동)의 “박달1동”을 “박달동”으로 “박달2동”을 “호현동”으로 한다.

② 「안양시 민방위 경보시설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민방위 경보시설 설치 현황의 “박달1동행정복지센터”를 “박달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③ 「안양시 다목적 복지회관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다목적복지회관 현황의 “박달2동다목적복지회관”을 “호현동다목적복지회관”으로 한다.

부칙 <2026. 3. 31. 훈령 제768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6. 3. 31.>

동담당관 지원 담당 동(제2조 관련)

구분		본청 (사업소 포함)		구
		실·국·소·원	과·담당관	
만안구 (14)	안양1동	복지문화국장	복지정책과장	민원봉사과장
	안양2동		노인복지과장	
	안양3동		장애인복지과장	
	안양4동		아동과장	세무과장
	안양5동		여성가족과장	
	안양6동		문화관광과장	
	안양7동	교육청소년과장	복지문화과장	
	안양8동	건강증진과장		
	안양9동	도시주택국장	주택과장	환경위생과장
	안양9동		건축과장	
	석수1동		도시혁신과장	
			도시계획과장	
	석수2동	AI전략국장	도시정비과장	건축과장
			신성장전략과장	
충훈동	AI정책과장			
박달동	도로교통국장	AI전략사업단장	교통복지과장	
호현동		정보통신과장		
동안구 (17)	비산1동	상하수도사업소장	대중교통과장	민원봉사과장
	비산2동		철도교통과장	
	비산3동		공공시설과장	
	부흥동	동안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세무과장
	달안동	안전행정국장	총무과장	
			체육과장	
	관양동		청년정책관	
	인덕원동		시민봉사과장	복지문화과장
	부림동	자치행정과장		
	평촌동	환경국장	공원관리과장	환경위생과장
			정원도시과장	
	평안동		생태하천과장	
			환경정책과장	
	귀인동	기획경제실장	기후대기에너지과장	환경위생과장
			위생정책과장	
	호계1동		홍보기획관	
	호계2동	기획경제실장	고용노동과장	건축과장
기업경제과장				
호계3동	정책기획과장			
범계동	예산법무과장			
신촌동	세정과장		교통복지과장	
갈산동	징수과장			

[별표 2] <개정 2026. 3. 31.>

여름철 호우 및 태풍 시 동담당관 지원 담당 동(제2조 관련)

구분		본청 (사업소 포함)		구
		실·국·소·원	과·담당관	
만안구 (14)	안양1동	복지문화국장	복지정책과장	행정지원과장
	안양2동		노인복지과장	
	안양3동		장애인복지과장	
	안양4동		아동과장	민원봉사과장
	안양5동		여성가족과장	
	안양6동		문화관광과장	
	안양7동	만안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세무과장
	안양8동	도시주택국장	주택과장	복지문화과장
	안양9동		건축과장	
	석수1동		도시혁신과장	
	석수2동		도시계획과장	
	충훈동	환경국장	도시정비과장	환경위생과장
			신성장전략과장	
			위생정책과장	
박달동	AI전략국장	환경정책과장	건축과장	
호현동		AI전략사업단장		
		정보통신과장		
동안구 (17)	비산1동	상하수도사업소장	AI정책과장	행정지원과장
	비산2동		수도행정과장	
	비산3동		수도시설과장	
	부흥동	동안구보건소장	청년정책관	민원봉사과장
	달안동	안전행정국장	홍보기획관	
	관양동		건강증진과장	
	인덕원동		자치행정과장	세무과장
	부림동	체육과장		
	평촌동	총무과장		
	평안동	도로교통국장	시민봉사과장	복지문화과장
	귀인동		공공시설과장	
	호계1동		철도교통과장	
	호계2동	기획경제실장	대중교통과장	환경위생과장
	호계3동		-	
	범계동		-	
	신촌동		-	
	갈산동		예산법무과장	환경위생과장
		고용노동과장		
		기업경제과장		
		정책기획과장	건축과장	
		세정과장		
		-		
		-	건축과장	
		징수과장		